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04.16.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펀드코드 : D2976]

투자위험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웰컴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웰컴코스닥벤처공모주리츠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주식부문]
코스닥150지수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및 코스닥 대형주에서 투자 유망한 종목을 선별 투자하는 한편, 코스닥 및 벤처기업 투자에 따른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코스닥150선물 매도 전략 병행
[공모주 투자]
저평가된 IPO 종목을 선별 투자하여 시장 대비 안정적인 초과 수익 창출 추구
[리츠 투자]
신규 상장 리츠종목에 IPO참여 및 공모가 수준 저평가 리츠종목 장내 매수
[채권 및 유동부문]
단기채권 및 REPO 매수에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 그러나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 파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 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이내	1.337	0.50	1.22	1.3510	257	399	545	855	1,7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837	1.00	1.58	1.8487	189	385	586	1,008	2,183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7%이내	1.087	0.25	0.86	1.1015	182	299	420	676	1,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287	0.45	1.14	1.2991	133	271	414	716	1,574

주 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 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4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웰컴자산운용
Welcome Asset Management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5년차	설정일이후	최초설정일
	25.04.17 ~ 26.04.16	24.04.17 ~ 26.04.16	23.04.17 ~ 26.04.16	21.04.17 ~ 26.04.16	20.04.10 ~ 26.04.16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14.48	10.56	9.32	5.20	9.18	2020/04/10
비교지수	24.28	12.46	9.39	5.41	6.59	
수익률변동성	7.52	6.97	6.61	6.98	7.21	

주 1) 종류 A수익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종류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비교지수 (KOSPI 지수 X 20%)+(CD금리 X 80%)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 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혼합파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 투자 기구 수(개)	운용 규모(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정호	1979	책임 (주식운용1팀, 팀장)	14	2,449	22.54	15.22	22.54	15.22	4년11개월
조일식	1968	책임 (채권운용팀, 본부장)	10	3,029	22.54	15.22	22.54	15.22	30년4개월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 및 **채권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 및 이력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 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어음 등의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의 원인으로 신용도 하락, 채무 불이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원금과 이자에 대한 회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투자신탁의 환매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및 공모주 우선배정에 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신주 및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코스닥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상기 투자비율 미 충족 시에는 소득공제 및 공모주 청약 시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공모주에 투자하며, 공모주는 일반적인 상장 주식에 비해 큰 가격변동성을 지녔으며, 한정된 물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 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주식 및 비상장종목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비상장 포함) 주식 및 코스닥종목에 주로 투자하므로 일반거래소상장기업 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며, 가격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대량환매 발생시 편입자산의 유동성 및 환금성 제약으로 환매가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환매자금을 조달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기존 운용전략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익자의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환매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table>
<tr><td>과세</td><td>•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은 거주자 개인, 내국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 함)로 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관한 과세
<table><tr><th>구분</th><th>세부 내용</th></tr><tr><td>관련 근거</td><td>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td></tr><tr><td>계약 기간</td><td>3년 이상</td></tr><tr><td>세제혜택</td><td>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수일 기준)한 금액(해당 투자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함)에 대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거주자 1인당 연 200만원 한도)</td></tr><tr><td>감면세액 추징</td><td>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투자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그 투자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투자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td></tr></table>※ 소득공제방법, 감면세액 추징의 제외사유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상기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웰컴자산운용㈜
(대표번호: 02-6353-73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welcomefund.co.kr)</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5월 20일</td><td>존속기간</td><td>신탁계약기간은 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 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table></td></tr>
</table>

수수료 마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 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 -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랩(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 계좌의 자산으로 동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elcome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elcomefund.co.kr)